

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칙

제 1장 총칙.
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라 칭한다. (이하 본 회라 칭한다.)

제 2조 (목적) 본 회는 교육대학원생의 복리를 증진하고 본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설치) 본 회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내에 둔다.

제 4조 (회원자격) 본 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제 5조 (권리)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- 1) 회원 모두는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2) 회원은 본 회의 사업계획, 재정, 그 밖의 운영전반에 관해 알 권리를 가진다.
- 3) 회원은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활동에 대하여 적극 참여해야 한다.
- 4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.

제 6조 (구성)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대학원 학생총회, 대의원회, 총학생회 및 집행부를 둔다. (단, 본 회칙에 의한 구성 이외의 신규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육대학원 대의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)

제 2장 교육대학원 학생총회.

제 7조 (지위 및 구성)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기구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8조 (명칭) 이회는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라 칭한다.

제 9조 (의장)

- 1)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의장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된다.
- 2)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를 진행한다.
- 3)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,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학생총회를 진행한다.

제 10조 (업무 및 권한) 교육대학원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1) 회원 전체의 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, 의결.
- 2) 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에 관한 탄핵을 의결.
- 3) 진행 사업의 보고.
- 4) 예산, 결산의 보고.
- 5) 기타 중요한 사항.

제 11조 (소집)

- 1)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, 또는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요구, 또는 회원의 1/5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.
- 2) 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
제 12조 (총회의 성립)

- 1) 총회는 회원의 1/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하고,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(단, 10조의 2항은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)

2) 서면으로 된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 13조 (발언권)

1)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발언권은 회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으며 필요시 의장에게 의사를 구하고 발언 할 수 있다.

제 3장 대의원회

제 14조 (구성)

- 1)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, 부회장, 집행부, 전공대표로 구성하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.
- 2)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 모두 궐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대의원회를 진행한다.
- 3)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, 집행부 모두 궐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대의원회를 진행한다.
- 4) 대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전공대표 중 1인을 학생회비 운영에 관한 '감사'로 임명한다.

제 15조 (소집)

- 1) 정기 대의원회는 매학기 시작 20일 이후, 종료 20일 이전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- 2) 임시 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전공대표 1/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10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3) 대의원회 구성원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반드시 대의원회 소집에 응해야 하며, 부득이하게 불참시 대리인 참석, 위임장 제출의 의무를 진다.

제 16조 (업무 및 권한)

- 1)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의결권.
- 2) 집행부 업무 계획 승인권.
- 3) 예산 및 결산의 감사 및 승인권.
- 4) 집행부 각 부장의 인준권.
- 5) 기타 단체에 대한 인준권.
- 6) 필요에 따라 각 권한을 총학생회로 상정 및 위임할 수 있다.
- 7)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임시특별기구의 제안, 설치 및 동의를 할 수 있다.

제 17조 (자격의 상실) ⇨ 20210909(금) 개정

1) 총학생회장의 자격 상실 제청(제 19조)을 통해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때

제 18조 (자격의 회복)

1) 총학생회장의 자격 회복 제청(제 19조)을 통해 대의원 자격이 회복된 때

제 19조 (자격의 상실 및 회복 제청)

- 1) 자격 상실 제청 사유(제 20조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 자격 상실 제청을 할 수 있다.
- 2) 자격 회복 제청 사유(제 21조)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,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 자격 회복 제청을 할 수 있다.
- 3) 자격의 상실 및 회복에 대한 제청이 나온 경우, 대의원회는 숙의와 투표과정을 거쳐 해당 제청의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.
- 4) 제청을 통해 이뤄진 자격의 상실은 대의원 총원 2/3의 동의를 요한다.
- 5) 제청을 통해 이뤄진 자격의 회복은 대의원 총원 과반의 동의를 요한다.

제 20조 (자격 상실 제청 사유)

- 1)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
- 2) 불손한 의도로 본 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때
- 3)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한 때
- 4) 대의원 2/3의 자격 상실 요청이 있을 때

제 21조 (자격 회복 제청 사유)

- 1) 자격이 상실된 전공에서 대의원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때
- 2) 대의원 1/3의 자격 회복 요청이 있을 때

제 4장 총학생회.

제 22조 (지위) 총학생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자 운영기구이다.

제 23조 (구성)

- 1)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, 부회장, 총무부장, 홍보부장(각 1인), 집행부원(2인)으로 구성한다.
- 2) 총학생회의 구성원의 3명이상이 같은 전공이어서는 안 된다.

제 24조 (임명)

- 1) 총학생회장은 회원 전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(선거는 보통, 비밀, 평등,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)
- 2)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과 함께 출마할 수 있으며, 학생회장 단독 출마의 경우 총학생회장의 추천과 정기대의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.
- 3) 각 부장은 지원서를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, 정기대의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. (단, 가부동수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.)
- 4) 집행부원은 각 부장의 추천서 혹은 지원서를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
제 25조 (임기)

- 1)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, 선발된 학기 종료일부터 다다음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2) 각 부장 및 부원의 임기는 1학기로, 최대 1년까지 연임가능하다.
- 3) 모든 임원은 어떠한 사유에서도 같은 직책으로 1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.
- 4) 임원중 결원이 생겨 충원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5) 탄핵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 26조 (소집) 총학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매달 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한다.

제 27조 (권한 및 의무)

- 1) 매학기 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.
- 2) 매학기 말 사업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.
- 3) 회원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현황의 공개.
- 4) 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 사항의 집행.
- 5) 회칙개정 발의.
- 6) 총회 소집에 응할 의무.
- 7) 차기 총학생회의 선거.
- 8) 운영에 필요한 임시기구 설치권과 특별기구 설치제안.
- 9) 기타 긴급사항의 결의, 집행.

제 28조 (자격의 상실)

- 1) 불손한 의도로 본 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경우.

- 2) 총회를 통해 탄핵될 경우.
- 3) 불성실한 태도로 총학생회의 운영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총학생회장의 직권으로 파면.
- 4) 개인 신변상의 문제로 더 이상 총학생회 집행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.

제 29조 (탄핵) 총학생회장은 아래의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된다.

- 1) 학생회비를 배임,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경우.
- 2) 불성실한 학생회 운영으로 인해 학생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.
- 3) 공식적 탄핵의 요구가 있을 시에 총학생회는 공식 성명을 게시판 등을 활용, 회원들 모두가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 30조 (장학금)

- 1) 23조의 1, 2항에 의거한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는 해당학기 수혜 장학금의 전액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.
- 2) 23조의 3, 4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상실한 집행부원은 해당학기의 남은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장학금을 학생회비로 환수한다.
- 3) 결원이 보충되었을 시에는 수행할 임기의 비율을 계산하여 전임자의 환수된 장학금을 재 지급한다.
- 4) 집행부원 2인은 매학기 당 500,000원(금 오십만 원)의 장학금을 학생회비에서 지원받는다.

제 5장 총학생회장.

제 31조 (지위)

- 1) 총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총학생회장은 총회와 대의원회 및 총학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, 처리하며 모든 안건의 결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.
- 2) 부 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3) 학생회장, 부 학생회장 양인 유고 또는 결위 시에는 집행부에서 선출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32조 (업무 및 권한)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- 1) 본 회의 학생총회 및 집행부 회의를 소집, 주재한다.
- 2) 회칙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.
- 3) 각 부장을 추천하여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다.
- 4) 각 부장의 추천으로 혹은 본인의 희망으로 집행부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심사하고 임명한다.
- 5) 학생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동의를 거쳐 교육대학원 학생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6)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
제 6장 비상대책위원회

제 33조 (지위 및 구성)

- 1)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비대위)는 탄핵, 사퇴, 후보자 미등록 등의 사유로 총학생회의 결위 시 총학생회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, 대의원회원들로 구성된다.
- 2) 대의원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의원회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며 비대위의 의장이 된다.

제 34조 (목적) 비대위는 정상적인 총학생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5조 (설치기간) 비대위는 총학생회의 결위시부터 학기 중 일자만 따져 30일내에 총학생회장 선관위를 구성해야하며, 총학생회가 구성된 이후 해산한다.

제 36조 (직무대리) 비대위는 설립일부터 총학의 모든 직무를 대리한다.

제 7장 재정

제 37조 (재정)

- 1)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수입금,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
- 2) 본 회의 재정은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3) 재정은 전액 본 회의 복지 및 학술연마를 위한 용도로만 운영가능하며, 본 회원이 아닌 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사적운영을 할 수 없다.

제 38조 (회계연도)

- 1)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전 학생회 임기종료 일시부터 다음 학생회 임기 시작 일시까지 만 1년으로 한다.

제 39조 (회비)

- 1) 본 회의 회비는 학생회에서 책정하며, 총회에서 심의·확정한다.
- 2) 회비는 입학한 학기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0조 (예산편성)

- 1) 예산편성은 사업비, 활동비, 장학금으로 나누어 학생회 회의에서 조정·확정한다.
- 2) 사업비는 학생회 공식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으로 운영한다.
- 3) 활동비는 공식 사업간 지출되는 통신비, 교통비, 주차비, 식대 등으로 운영한다.
- 4) 장학금은 4장 25조에 따른다.

제 41조 (준예산편성)

- 1) 총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- 2)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각 행사에 따를 예산을 별도로 학생회 회의에서 심의·확정한다.

제 42조 (심의 및 승인)

- 1) 총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기 내에 심의하고 승인받는다.
- 2) 거부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기 내에 토의를 거쳐 수정하고 승인받는다.

제 43조 (예산집행 및 경정예산)

- 1) 예산 집행안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행사 종료 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- 2)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학생회 회의를 거쳐 심의·확정한다.

제 44조 (공고) 학생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내역을 7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45조 (예산관리)

- 1) 학생회비 징수·관리는 총무부에 위임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.

제 46조 (인수인계)

- 1) 당해 총학생회는 차기 학생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학생회비의 일부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.
- 2) 차기 총학생회장은 결산보고에 필히 참석해야하며 임기의 시작 일에 학생회비 잔액을 인계한다.

제 8장 기타

제 47조 (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반영)

- 1)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을 반영하여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활동을 할 수 있다. 단,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가 연합회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특별한 활동이 없다고 총학생회장이 판단 될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.
- 2)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임원진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(대의원), 부총학생회장(집행위원) 2인으로 활동하며, 추가 선발이 가능할 시에는 교육대학원 총학생회 임원진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.
- 3) 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 연합회 회칙에 따라 연합회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 9장 회칙의 개정.

제 48조 (발의)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, 집행부 인원 과반수, 대의원 1/3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한다.

제 49조 (의결)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 50조 (공포)

- 1) 교육대학원 대의원회에서 의결,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의장이 즉시 공포한다.
- 2) 공포 후 7일 이후까지 회원들의 정정건의가 없을 시 발효한다.

부칙.

제 1조 (관례)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